

제 2차 성인지 교육

1. 용어 되짚어보기

성폭력: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

성희롱: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노동권이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여성 혹은 남성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

2차가해: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책임,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유형: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사건 처리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가해자중심적인 서술들을 깨뜨리고 가해자 언어가 유발하는 다양한 피해 사실들이 또 다른 폭력임을 문제제기하는 것.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입막음과 처벌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것

2.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언어적 성폭력 사례
 - '넌 왜 업그레이드 안하나? 보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지'
 - '요즘 실험실 분위기도 칙칙한데 치마 좀 입고다니면 안 되냐? 실험실에 여자라고는 달랑 너 하나잖아'
 - '나 너한테 관심있는 거 알지? 괜히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웃음 팔고 다니지 마라'
 - '착각은 자유지만 남자라고 아무한테나 성희롱하냐? 그것도 얼굴, 몸매가 되야 하지'
 - '예쁘면 성질 나빠도 다 용서가 되는데 넌 그것도 아니잖아? 성질만 까칠해가지고'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 FM 및 각종 게임의 에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예방

(1) 새터/MT

- 1차적으로 성별에 따른 공간분리
-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 성을 대상화하는 놀이, 촌극 자제

(2) 술자리

-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들이 성폭력적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체크
-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자리배치를 바꾸거나 가해자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의 행동

(3) 언어성폭력

- 언어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 가해자의 발언을 막고 공동체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4) 밤거리 성추행, 스토킹

- 소리지르기
- 몸이 커 보이는 동작 취하기
- 격투기 등 몸을 쓰는 연습
-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신고

4. 성희롱, 성폭력 대처

(1)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심리적, 신체적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이나 성폭력 상담실 등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서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어느 누구도 성폭력을 당할만한 이유는 없으므로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상처와 불안감 등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으로 받아들이기: 심신이 안정된 후, 진정한 해결을 위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자. 사회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라는 단어가 지닌 잘못된 통념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 사람 전체를 말하는 정체성이 아님을 명심하자.

-사건대처방향 정하기: 학교 성폭력상담실을 통해서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상담실에 신고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비공개/공개 사과와 함께) 징계, 성폭력 예방교육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되었을 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중심적인 문화에서 스스로 잘못된 줄도 모른 채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억울해 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3) 주변 동료나 사건 지원자일 때

-피해자의 동료라면: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주어진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해주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행동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돕자. 강간과 같은 신체적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도록 한다.

-가해자의 동료라면: 친밀감이 훼손될까봐 가해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주변의 반응을 걱정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할 때 사건에 직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임을 조언하고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자.

5. 성폭력 사건의 처리

- 사건발생 단위의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는 성폭력, 성희롱 상담실에서 피해상담을 먼저 하는 것을 권유한다.

(1)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중재인으로 구성됨
 - 구성 시 학내 성폭력 상담실과 총여학생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각의 단위에서 주체가 참여해야 함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 단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함
 -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원보호와 주의가 필요함

(2)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

- 피해상담시 피해자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 처리를 원할 경우
 - 상담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사건 종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건은 상담일지에만 기록으로 남음
- 피해상담시 피해자가 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처리를 원할 경우 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 피신고인, 관련인을 조사함 (취지문 작성)
 - 교수, 교직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사건 회부
 - 각 사건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짐

※ 학내의 성폭력 상담실은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나 학생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학내 기관을 통한 해결은 피해자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참고: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성희롱 성폭력 없는 캠퍼스> <성폭력 사건 해결주체를 위한 가이드북>

6. 사건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 02-2123-2118 helper@yonsei.ac.kr 월-금 09:00~17:00
- 총여학생회 02-2123-3645 010-2255-3645 yonseiho@yonsei.ac.kr
-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338-5801~2 ksvrc@sisters.or.kr <http://www.sisters.or.kr>